

#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

제정	2011.01.01	1차 개정	2011.12.01
2차 개정	2012.02.10	3차 개정	2014.01.01
4차 개정	2021.02.22	4차 개정	2022.05.02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와 학칙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우송정보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칭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심의위원회는 당해 대학 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, 그리고 관련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5.2>

1. 교직원 4명 <개정 2022.5.2>
2. 학생 3명 <개정 2022.5.2>
3. 관련전문가 3명(학부모 또는 동문 1명을 포함할 수 있다) <개정 2022.5.2>

②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심의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.

**제3조(위원위촉)** ①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1.02.22.>

1. 교직원 위원 중 교원은 교수회에서 추천한 자, 직원은 직원회에서 추천한 자 <개정 2021.02.22.>
2.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장이나 총학생회의 추천을 받은 자 <개정 2021.2.22.>
3. 관련전문가 위원은 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총학생회장과 총무처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자 <개정 2021.2.22.>

②위원의 선출과 관련된 절차 및 과정 등은 따로 정한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또한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5조(위원 자격상실)** ①교직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직 및 퇴직
2. 징계에 의한 직무해제
3. 사임서를 제출한 때
4. 위원이 그 직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

②학생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변동일로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다.

1. 휴학 및 졸업

2. 학칙 및 총학생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징계처분
3. 3개월 이상의 교환 학생으로 파견
4. 기타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

**제6조(위원장)**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선임한다. <개정 2021.2.22.>

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**제7조(사무관장 등)**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는 총무처에서 관장하며,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2.22.>

②간사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2.22.>

**제8조(회의)**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2.5.2>

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, 안전 및 회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 <신설 2022.5.2>

1.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전: 회의 개최 7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통지 <신설 2022.5.2>

2. 회의 자료: 회의 개최 5일(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) 전까지 통지 <신설 2022.5.2>

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 <개정 2022.5.2>

④위원장은 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22.5.2>

**제9조(위원회의 기능)**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등록금 산정에 관한 사항
2.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그 밖의 등록금 산정에 관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21.2.22.>
4. 고등교육법 제11조제4항 관련 등록금 면제·감면에 관한 사항 <신설 2021.2.22.>

**제10조(자료요청 및 협조)** 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책정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대학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비밀유지)** 위원 및 관계 교직원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2조(회의록)** ①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, 보존하여야 한다.

②회의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회의록은 참석위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3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2.22.>

**제13조(운영세칙)**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21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예산편성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**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